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2024. 12.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4-159
----------	--------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4. 11. 15.
- 다. 회 부 일 : 2024. 11. 18.

##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3.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 가. 세 입
  - 해당 없음.
- 나. 세 출
  -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54억1,29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9,935만원 대비 9억1,361만3천원, 20.31% 증액된 규모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5,412,963	4,499,350	913,613	20.31%
정책사업	2,119,763	1,919,720	200,043	10.42%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3,293,200	2,579,630	713,570	27.66%

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5,412,963	4,499,350	913,613	20.31%
일반공공행정	2,119,763	1,919,720	200,043	10.42%
입법및선거관리	2,119,763	1,919,720	200,043	10.42%
선진의회상 정립	2,119,763	1,919,720	200,043	10.42%
의정활동 지원	2,018,635	1,821,940	196,695	10.80%
의정활동 홍보	101,128	97,780	3,348	3.42%
기타	3,293,200	2,579,630	713,570	27.66%
기타	3,293,200	2,579,630	713,570	27.66%
행정운영경비(구의회사무국)	3,293,200	2,579,630	713,570	27.66%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3,131,566	2,404,746	726,820	30.22%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161,634	174,884	△13,250	△7.58%

-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21억1,97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0.42%, 2억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2억9,320만원으로 전년대비 27.66%, 7억1,3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음.

라.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의회사무국	5,412,963	4,499,350	913,613
선진의회상 정립	2,119,763	1,919,720	200,043
의정활동 지원	2,018,635	1,821,940	196,695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917,485	1,740,285	177,200
인건비	20,228	40,499	△20,271
일반운영비	154,787	151,201	3,586
여비	51,350	44,350	7,000
업무추진비	53,494	53,494	0
직무수행경비	20,325	14,707	5,618
의회비	1,410,976	1,303,242	107,734
일반보전금	6,600	5,400	1,200
포상금	3,200	3,200	0
연금부담금등	72,000	39,600	32,400

(단위:천원)

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비및부대비	41,960	40,150	1,810
자산취득비	82,565	44,442	38,123
국외 선진의회 연수	101,150	81,655	19,495
일반운영비	1,400	980	420
의회비	99,750	80,675	19,075
의정활동 홍보	101,128	97,780	3,348
의정활동 언론 홍보	33,000	33,000	0
일반운영비	33,000	33,000	0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68,128	64,780	3,348
일반운영비	68,128	43,000	25,128
행정운영경비(구의회사무국)	3,293,200	2,579,630	713,570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3,131,566	2,404,746	726,820
인력운영비	3,131,566	2,404,746	726,820
인건비	3,131,566	2,404,746	726,820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161,634	174,884	△13,250
기본경비	161,634	174,884	△13,250
일반운영비	99,633	111,683	△12,050
여비	37,800	40,320	△2,520
업무추진비	15,801	15,081	720
직무수행경비	8,400	7,800	600

○ 주요 증액 사업을 예산서 편성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9,120만원(36.36%)
- 월정수당(의정월정수당) : 1,540만2천원(2.5%)
- 의원상해부담금(직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 3,240만원(81.82%)
- 자산취득비(직원 사무용 전산장비, 전자철판 구매) : 3,812만3천원(85.78%)
- 의원국외여비(해외비교시찰, 국제회의, 자매결연) : 1,907만5천원(23.64%)
- 사무관리비(제수수료, 의회연보, 홍보동영상 제작) : 2,102만8천원(68.17%)
- 보수(연봉제, 호봉제, 수당, 급식비 등) : 6억9,092만3천원(34.06%)
-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연봉 및 수당 등) : 3,589만7천원(9.54%)

-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속기 사무보조 인건비) : 2,027만1천원(△50.05%)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직원 특근급식비) : 1,265만7천원(△12.05%)
  - 기본경비 국내여비(직원 관내 출장여비) : 252만원(△6.25%)

#### 4. 검토결과

##### 가. 예산규모

-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포구 전체 예산액의 0.65%인 54억 1,29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9,935만원 대비 20.31%, 9억1,361만3천원 증액된 규모임.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선진의회상 정립’ 사업 예산은 21억1,97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1,972만원보다 2억4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2억9,3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7,963만원보다 7억1,357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억7,720만원(10.18%) 증액된 19억1,748만5천원을 편성했음.
- 인건비(속기 사무보조)는 전년 예산 대비 △2,027만1천원, △50.05%

감액한 2,022만8천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58만6천원, 2.37% 증액된 1억5,478만7천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1,970만원), 차량 유지비(1,700만원), 방문 기념품(1,095만원), 음향영상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1,680만원), 인쇄비(1,054만원),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805만2천원), 전자회의시스템 연간 유지 보수비(833만1천원), 정년퇴임식 관련 행사운영비(480만원),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행사 지원(24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음.
- 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00만원(15.78%) 증액된 5,135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의원해외비교시찰 등 수행경비로 국제화여비 증액편성(3,500만원→4,200만원)에 의한 것임.
-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349만4천원임.
- 직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인 대민 활동비로 전년 예산 대비 38.2%, 561만8천원 증액된 2,032만5천원을 편성하였음.
-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회비는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예산 대비 8.27%, 1억773만4천원 증액된 14억1,097만6천원이 편성되었음.
-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6.36%, 9,120만원이 증액된 3억4,200

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함.
-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원의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의 수당을 편성한 것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22.22%, 12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음.
- 포상금은 직무유공 공무원(의회직 대상) 표창 부상품 및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의 근속위로경비와 격려금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20만원이 편성되었음.
- 연금부담금등은 전년 예산 대비 81.82%, 3,24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직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4,800만원)과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장애(2,400만원) 항목으로 편성되었음.
-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4.51%, 181만원 증액된 4,196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의회 1층 냉난방기 설치, 의회 2, 3층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것임.
- 자산취득비는 직원 사무용 전산장비와 의장실, 부의장실 전자철판 구매, 본회의장 및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매 비용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5.78%, 3,812만3천원 증액된 8,256만5천원을 편성하였음.
- “국외 선진의회 연수” 사업은 일반운영비(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회 참석수당)과 의회비(의원국외여비)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23.87%, 1,949만5천원 증액된 1억115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의정활동시 필요한 보도비용 및 광고금액과 신문 구독료 및 의회연보 제작,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74%, 2,512만8천원 증액한 6,812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 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됨.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으로서 의회사무국 정원(38명)을 기준으로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0.12%, 7억2,437만9천원 증액된 31억2,912만5천원이 편성되었음.
-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며 의회사무국 직원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84%, 2,427만7천원 증액된 2억1,308만1천원을 편성하였음.

## 5. 검토의견

-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54억 6,831만9천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44억9,935만원 대비 9억6,896만9천원(21.54%) 증액 편성됨.
-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의회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

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고려하여 편성 제출됨.

-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의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280만원)은 국 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확대에 대비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 음. 이 위원회는 관련 법령<sup>1)</sup>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회의 윤리성과 책 임성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음. 지난해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 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 의회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 가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자문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이 실효성 있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회 청렴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정활동비’ 는 전년도 대비 36.36%, 9,120만원 증액된 3억4,200만원 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10월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 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내용이 의결되어 2024년부터 의정활동비를 최대 월 50만원 인상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sup>2)</sup>이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그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성격의 예산임. 마포구는 ‘서 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2024.3.8.) 한 사항을 제267

1) 공직자윤리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1,200,000원 이내	월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900,000원 이내	월200,000원 이내

회 임시회에 의결하여 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하였고 2025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것임.

-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2.5%, 1,540만2천원 증액된 6억3,119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월정수당에 전년도(202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5%)을 적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 대비 81.82%, 3,240만원 증액된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당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

전년 대비 편성액이 증가한 사유는 그동안 지급기준 적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sup>3)</sup>에 따라 시·도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준(서울시 의원 의정활동비 200만원)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 의정활동비(마포구 의원 의정활동비 개정전 110만원)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발생한 예산 편성의 행정오류 사항을 바로잡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이 같은 사항은 조례로 정한 지급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그 증액 편성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85.78%, 3,812만3천원 증액된

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서울시 의원 의정활동비(200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150만원), 보조활동비(월50만원)

8,256만5천원이 편성되었음. 세부내역을 보면 본회의장(2,485만원)및 회의실(572만원) 빔프로젝터 설치와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전자칠판(1,210만원) 구매, 내구연한(6년) 경과하고 고장난 노트북 구입비(962만5천원), 직원 사무용 PC(1,640만4천원) 및 모니터(288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등임.

- 의회 노후집기 및 정수물품 교체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노후 집기, 사무용품 등을 적시에 교체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과 불필요한 교체 등으로 예산 낭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야겠음.
- ‘의원국외여비’ 는 전년도 대비 23.64%, 1,907만5천원 증액된 9,975만원이 편성되었음. 해당 예산은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로서, 국제물가 상승과 경비 현실화를 반영하여 의원 1인당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350만원→420만원)하고,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반영하였음.
- 현실 물가를 반영한 증액은 불가피해 보이나 주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을 위해 국가별 방문계획을 미리 작성하고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의 항공요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해야 하겠음.
- ‘의정활동 홍보내실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는 전년도 대비 68.17%, 2,102만8천원 증액된 5,187만6천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제9대 후반기 마포구의회 의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신규 편성(2,000만원)한 것이 증액 사유임.

- 홍보는 시기를 고려해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데, 금번 홍보 영상 제작은 후반기 의회 의정활동 자료 부족등의 사유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시의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사료됨. 홍보의 효과성을 위해 영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종합홍보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 보임.
-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의회사무국 정원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4.06%, 6억9,092만3천원 증액된 27억1,929만9천원이 편성되었음. 증액 사유는 의회사무국 정원 반영과(29명→38명)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적용,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 예산 통계목이 ‘기타직 보수’(101-02)에서 ‘보수’(101-01)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와 한시임기제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보험료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9.52%, 3,589만7천원이 인상된 4억1,226만7천원이 편성되었음. 증액 사유로는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 적용과 육아휴직 예정 직원(1명)에 대한 한시임기제 채용에 따른 보수를 편성한 것임.
-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회기 중 속기 사무보조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50.05%, △2,027만1천원을 감액한 2,022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감액 사유로는 그동안 속기직 정원을 확보하지 못

해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했던 것을 일반 속기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예정인원을 감축한 사항임.

-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는 전년 대비  $\Delta 12.05\%$ ,  $\Delta 1,265$ 만7천원을 감액한 9,240만1천원을 편성하였음. 감액 사유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서 특근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및 종료 최소1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제공되는 급식비로서 2024년 단가는 인상(8,000원→9,000원) 되었음에도 마포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비를 감조정(100%→60%)함에 따라 감액된 것임.
- 복무규정과 회계관리 훈령에 따른 지급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고 공무원 권익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무원 복지 강화 차원의 충분한 자원 확보가 필요해 보임.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는 전년 대비  $\Delta 6.25\%$ ,  $\Delta 252$ 만원을 감액한 3,780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액 사유로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를 마포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비를 감조정(35%→25%)함에 따른 사항임.
- 종합하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전년도의 기능 유지를 중심으로 정원 증가로 인한 사항이 주요 증액 사유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음.
- 의회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으로 전년도 총액한도<sup>4)</sup> 대비 소비자

4)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2025년도 의회 총액한도는 3억8,600만원으로서 산정범위 내 있음.

- 그동안 지방의회 독립과 제9대 의회 출범, 코로나 종식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많았음. 한정된 예산으로 다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성목별 세밀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의정활동 소요경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의회 청사 시설 관련 예산은 주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물품 교체 및 시설의 사후보수 측면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음. 중장기적 계획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의정활동 다양화로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 또한 강화해야 하므로 자기계발 및 전문·실무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위탁교육훈련 계획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사기진작 차원의 적극적인 복리후생 예산 마련을 위해 구청과 의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셋째, 선진의회 정립과 관련한 의원의 공무상 국외연수비는 작년과 비교하여 현실물가를 반영한 계상이 이루어 짐. 다만,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지적<sup>5)</sup>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례적 연수계획이 아닌 국내외 학술 세미나와 포럼 등의 참석 목적이 있는 혁신적인 연수 계획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의원국외여비는 경비의 위법 집행 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

5) MBC(2024.6.26.) 지방의회 '관광지' 일색 해외출장..."의원은 놀아도 나가 놀아야"

정하여<sup>6)</sup> 예산 삭감 등 제재 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바, 혁신적인 국외 연수 선진화 계획이 마련돼야 하겠음.

- 넷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불가함.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 정책연구용역비로 발주 가능한데, 제한된 인원 속에서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면 소규모 용역이 발주되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실한 용역 성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 경쟁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권한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술적으로 연구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선정되고 초당적인 인적 구성으로 연구단체가 선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에 사무국에서는 구성요건과 주제 등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연구단체의 체계적 관리와 용역의 우선순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지원 계획이 필요해 보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6) 이와 관련해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참고]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1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8,052	
2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2,800	
3	신규공무원증 제작	사무관리비	750	
4	의회 청사관리용품 구매	사무관리비	4,000	
5	에어컨 필터청소	공공운영비	2,500	
6	홍보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20,000	
7	속기 기계 수리비	공공운영비	1,500	
8	촬영장비 수리비	공공운영비	500	
9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2,100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